

2022년도 주요 반부패 · 청렴정책과 추진과제

2022. 1.



국민권익위원회

순 서

I. 반부패 정책 성과와 추진여건	1
--------------------------	---

II. 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7
-----------------------------------	---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10
2.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시행	13
3.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	16
4. 공공재정 누수 실태점검 강화	18
5.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19
6.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확립	21
7.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23
8.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	27
9.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29
10.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창구 일제정비 추진	31
11. 비위면직자 사각지대 관리 강화	32

Ⅲ. 협조사항 34

1.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처리 협력 강화 36
2.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 감사 면책 37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39
4.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협조 요청 40

[참고자료] 41

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 비교표 서식) 43
2. 청렴연수원 개발 최신 콘텐츠 목록 44
3. 부패·공익신고 창구 개선 협조요청 사항 45

[부 록] 51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53
2. 부서별 업무담당자 57



반부패 개혁 성과와 개선 요인

I.

반부패 개혁 성과와 개선 요인

1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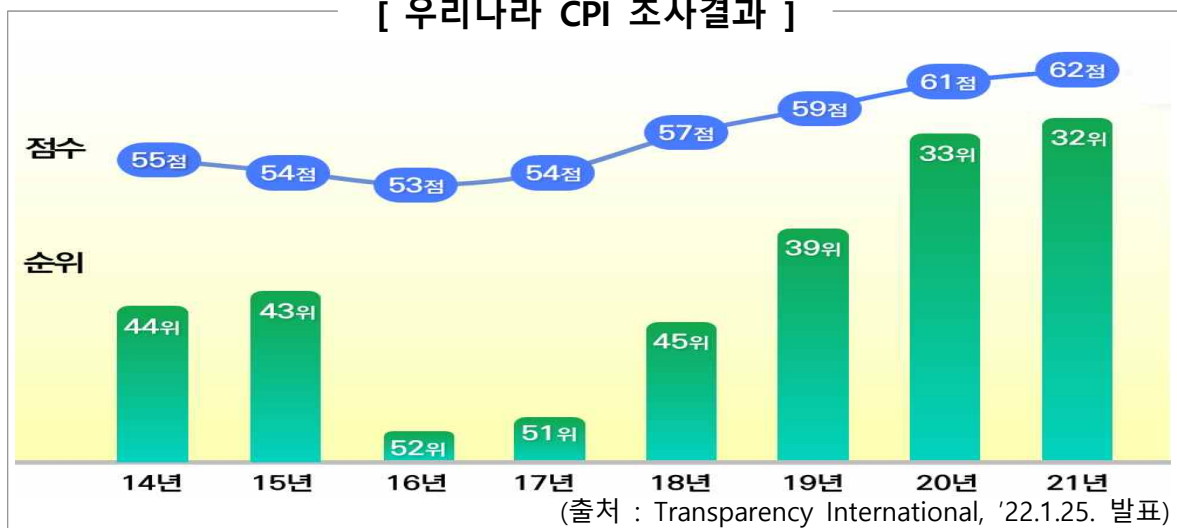
□ 국제적 평가 개선

- (국가청렴도 추이) 2021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에서 전년 대비 1점 상승한 62점(만점 100점 기준) 기록

-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전년대비 1단계↑)를 차지하며 30위권 초반대 안착, 5년 연속 상승

- * ('17)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18)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19)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20) 국제반부패회의 한국 개최, ('2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우리나라 CPI 조사결과]



- (부패통제 수준)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국가별 부패 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청렴지수(IPI) 순위 상승

[공공청렴지수 조사결과]

- '21년도 평가(총 114개국)에서, 18위로 '19년도 대비 순위(2단계) 상승 및 아시아 지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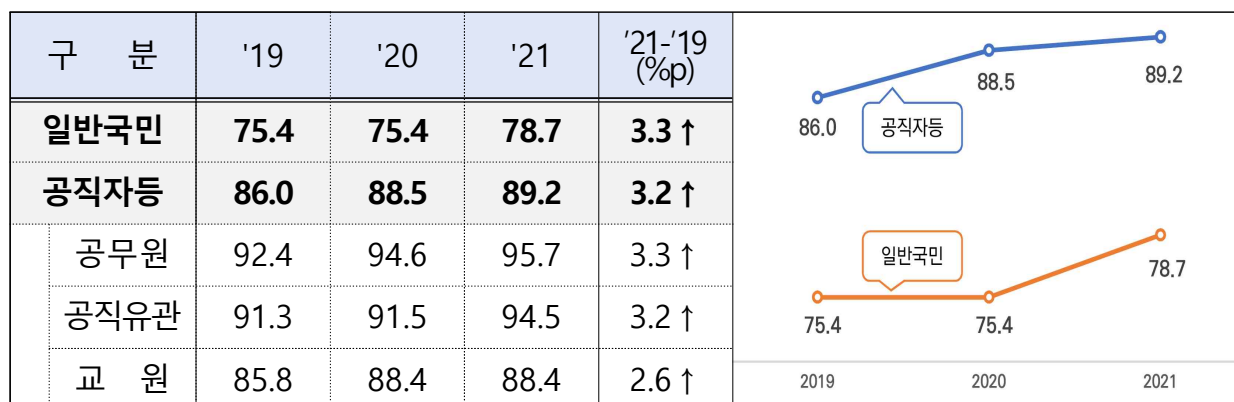


- **(기업경영 환경 청렴성)** 뇌물위험매트릭스*에서 194개국 중 21위로 역대 최고 순위, 기업 경영과정에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개선
 - '17년 33위 → '18년 25위 → '19년 23위 → '20년 22위 → '21년 21위
 * BRM(Bribery Risk Matrix) : 특정 국가에서 사업 시 허가·승인 등을 이유로 공직자로부터 뇌물요구에 노출될 위험 수준을 평가(출처 TRACE 社)
-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로마 G20 정상회의 선언문)**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흥미로우며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사례(best practice)로서 유용'(21.11월)
 - **(이코노미스트)**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했다고 인정(21.2월)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지도자의 반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견고했던 정경유착의 관행이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21.3월)

□ 국민들의 반부패 · 청렴인식 긍정적 변화

-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8.7%), 공직자 등(89.2%)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응답(%)]



(출처 : '21년도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결과(일반국민 2천 명), 권익위, '21.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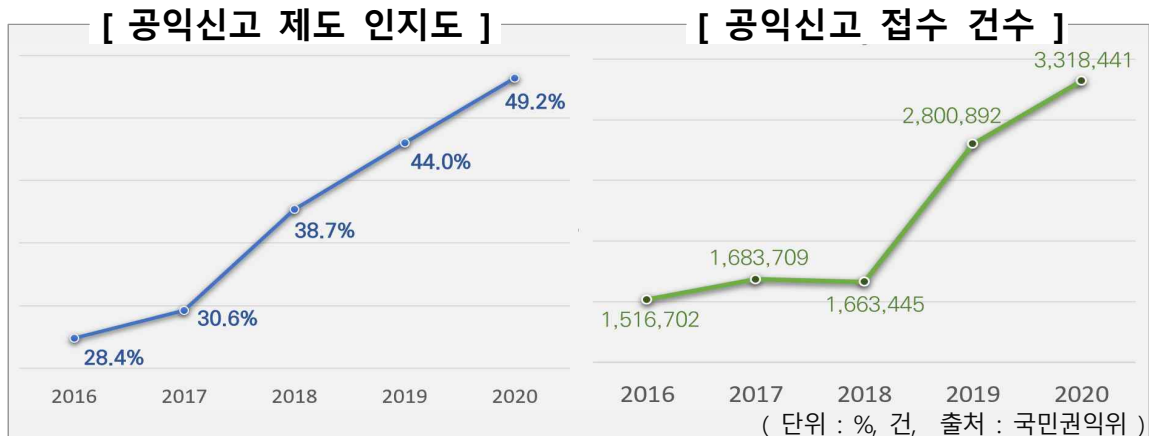
-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올해 시행('22.6.8.)됨에 따라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부정청탁 행위 근절 및 신고 활성화 기대

* (주요내용) ❶ 기존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포함, ❷ 변호사 대리신고제 도입, ❸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제도 도입

- (공익신고 제도 인지도 증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 대비 5.2%p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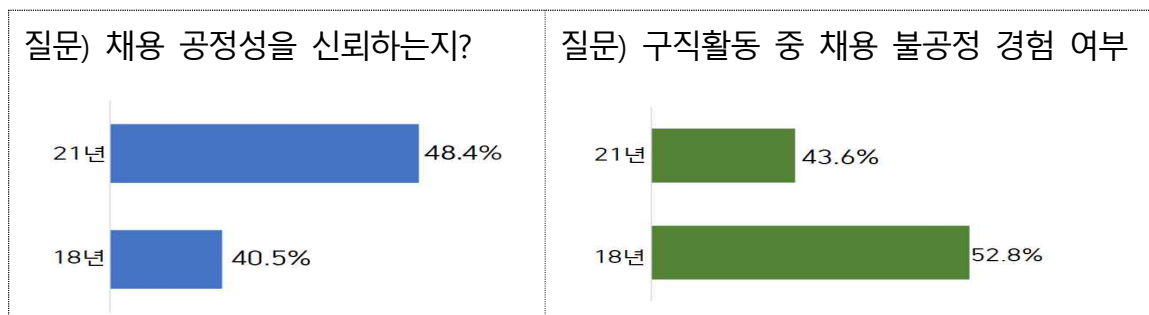
- 아울러, 공익신고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년에는 시행 초기인 '11~'12년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증가

* 중앙·지자체·공공단체 공익신고 접수건수 : ('11~'12) 42만건 → ('20) 332만건



- (채용 공정성 인식 개선) 취업준비생 등 설문조사 결과, 채용공정성 신뢰 수준이 '18년 대비 약 8%p 향상('18년 40.5%→'21년 48.4%)

* '19년 이후 채용비위 265건 적발(수사의뢰 45건, 징계 220건), 피해자 구제 168명



(출처 : 구인구직플랫폼 '사람인' 조사, '21.7월)

□ 반부패 제도는 고도화되었으나 기관별 수용도 격차는 심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5.18.) 및 「청탁금지법」 개정('21.12.7.)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제도 구축은 일단락
- 시·군 및 공공기관 등 일선 현장별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내재화 수준의 격차 발생으로 국민들의 반부패 체감도 향상에 장애
 - ※ (시·군) 시보 떡 돌리기, 국·과장 모시는 날 등 부조리 잔존('21.10.17, 파이낸셜뉴스)
 - (공공기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문제 등

□ 정치 이벤트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우려

- 대통령('22.3.9.) 및 지방선거('22.6.1.)가 상반기에 실시 예정
- 중앙·지방정부 교체시기에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 가능성
 -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 이후 채용·이권부여 약속 등 부적절 사례

□ 반부패·청렴가치의 중요성은 지속 증대

-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와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

✓ “부정부패야 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 (‘20.12.9,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통령)

✓ “코로나-19 팬데믹의 건설적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부패가 필수불가결” (‘20.12.1, IACC, 안토니오 구테리슈 UN 사무총장)

□ 코로나-19·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부패 진화

-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공직자 재량권 및 국가재정 지출 확대로 부패발생 가능성 증가
- 암호화폐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악용한 부패수익 세탁 및 은닉 고도화 등 새로운 부패유형 지속 발생



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Ⅱ.

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정부 구현
- CPI 20위권 안착 -

목표

반부패·청렴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전략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지원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

① 반부패·청렴
제도의 고도화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시행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

②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 공공재정 누수 실태점검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규범 확립

③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과 협력

-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창구 일제 정비 추진
- 비위면직자 사각지대 관리 강화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을 원활히 이행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 시행 준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 예정)의 차질 없는 시행

- (하위규범 완비)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에 기초한 제도운영지침 표준안 및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안정적 시행기반 구축
 - * 표준안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 제정·운영 지원
- (교육·홍보) 법 적용대상인 약 200만명 공직자 대상 체계적 교육 실시 및 공공기관 자체 교육 지원, 대국민 홍보로 신속한 제도 정착 유도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업무편람 제작·배포(3월), 기관 유형별 워크숍·설명회 개최(3~4월), 표준 강의안 및 강사 매뉴얼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5월)
 - * 표준 교안 및 강사 매뉴얼 제작,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등재(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법·제도 관련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계속 추진
- (제도운영 기반 마련)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석자문단 운영(5월~), 이해충돌방지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운영(6월) 등
 - * 정부 통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청렴포털에 표준 신고시스템 구축(’22.1.~6.), 법 위반 행위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고창구 및 공직자 신고의무 이행 관련 창구를 우선 개통하고, 분석·통합검색 기능은 순차적으로 개통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제출 (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참조해 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① 운영지침 전문,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의 비교표를 공문으로 제출

- 권익위는 각 기관별 운영지침의 적정성을 검토 후 법체계 및 취지, 형평성 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사항을 회신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은 신속히 검토 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전 공공기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1조의 자격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운영지침에 지정*하고 지정 현황을 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

* (예)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 따른 OO도의 ○○○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OO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시행령 제6조의 기관 및 시행령 별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사업명, 근거법률 및 조문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의 별표를 참조해 기관 자체 운영지침의 별표로 지정

○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전 공공기관)

-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권익위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 조사, 이행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 등 협조 (해당기관)

- 특히, 지자체 등에 대한 실태점검 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제도개선 사항 적극 검토 등 협조

-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 (해당기관)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전 공공기관)
 - 부패취약시기 등에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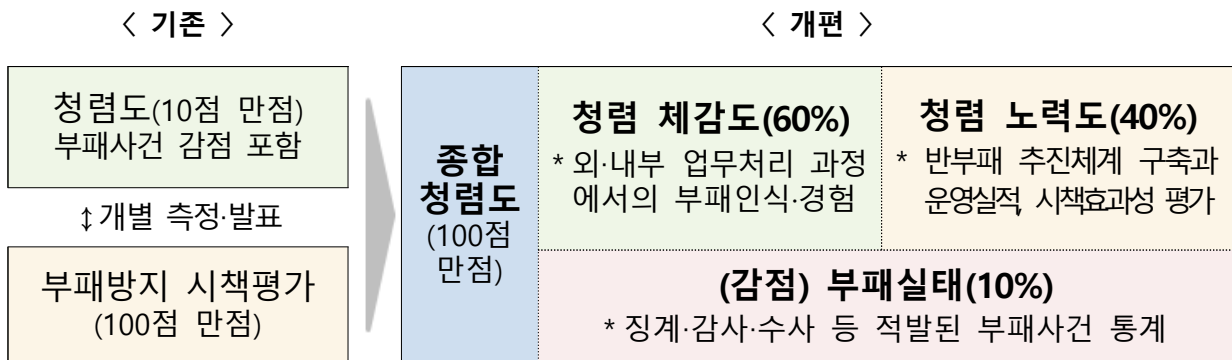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시행

- ◇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

□ 종합청렴도 평가 주요 개편 사항

※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21.12.9. 발표) 참조

- (평가체계)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재편하여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 평가(100점 만점, 5등급제)



※ 기관 유형에 따라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가 달라질 경우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 평가 영역의 반영비중 조정 가능

- (대상기관) 기관의 업무·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파급력이 크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매년* 전수 종합 평가 실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시도 교육청,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500개 내외

- 매년 평가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기초의회 등도 매년 기본
계획상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

※ 지방의회의 경우 '22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평가 제외 검토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 공사·공단, '21년 청렴도·시책평가 미흡기관 등은
'22년 평가대상 포함 검토

- **(추진일정)** 종합평가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 기본방향('22.2~3월, 기본계획), 평가 지표 및 자료제출 등 세부 추진사항('22.4~5월, 실시계획) 마련

구분	주요일정
자료제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5월),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실태 자료 제출(7월), 청렴 노력도 실적 자료 제출(11월)
평가실시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평가(8~12월), 반부패 노력·실적 정량·정성평가(~12월), 평가결과 분석·발표('23.1~2월)

※ 세부 일정 및 추진방식은 일부 변경 가능,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

□ 주요 평가 방향

- **(청렴체감도)**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구분	주요내용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 결과를 가중합산하여 점수화
부패경험	구체성·객관성이 높은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으로 구성하고,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 결과에서 감점으로 반영

- **(청렴노력도)**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의 효과성을 정량·정성 및 설문조사*로 평가
 - 기초자치단체, 신규·소규모 기관 등 기존에 매년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관은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

* 노력도 핵심 지표 관련 실질적 시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인 시책 효과성 평가 결과 반영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영
 - 국민의 눈높이와 반부패 관련 법령 제정 상황 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적극적으로 운영
 - ※ 직무관련 성비위, 외부적발 비율 등에 대한 감점 범위·기준 확대 검토
 - 산식에 의한 1차 정량평가, 주요 사건 등에 대한 2차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감점 산정

[협조 요청 사항]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3월) 및 실시계획(4~5월)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 소통·공유 절차 추진
 - 관계기관 간담회(1월~3월) 및 워크숍(3월~4월) 적극적 참여
 - ※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추진 여부 및 일정의 변경이 가능하며, 추진 일정 및 방식을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평가 항목·지표, 기관별 측정 업무 등 '22년 평가 추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2월~4월)
 - ※ 필요시 관계기관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 ※ 기본계획 송부 후 각급 기관별 평가 담당자 현황 제출(2월~3월)
- '22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5월),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자료 및 부패 실태 자료 제출(7월), 청렴 노력도 실적 자료(11월) 등 평가자료 제출
 -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 충실성, 신뢰도 저해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하반기)
 - ※ 점검 대상, 추진 일정 및 방식 등 추후 확정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21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후속조치 실시
 - '21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3.31.)

- ◇ 법령 개정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 등을 통한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 ◇ 교육·홍보를 통한 자율적 법 준수 노력 촉진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및 후속조치

- (개정 후속조치)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법 개정('22.6.8 시행)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각종 매뉴얼 갱신(상반기)

< 청탁금지법 개정 주요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 추가
-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 '**구조금 제도****' 도입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

□ 교육·홍보를 통한 일선기관의 제도운영 지원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법 개정내용, 형사처벌·과태료·징계 사례, 운영 중점방향, 주요 유권해석례, 신고처리 방법 등 안내(연 2회)
 - ※ 언론인 대상 강사·콘텐츠 지원 및 소통 등 교육 강화 별도 추진

- (법 바로 알리기) 공직자·국민이 가진 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사항을 중심으로 보도자료·카드뉴스 등 활용·전파

※ (예시) 설·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등의 선물은 20만원까지 허용('21.12.16 법 개정)

< 참고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 직무와 무관한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수수 허용 예시
 - ① 업무상 만날 여지가 없는 학교 동창인 공직자 친구의 경조사
 - ② 명절에 공직자인 친척에게 주는 한우
 - ③ 같은 기관 내 인사·평가·감사 등에 연관되지 않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주고받는 식사

□ 실태점검을 통한 각급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 **(취약 분야)** 언론·국회 지적 등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이슈, 공직자 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구분	분야(예시)	시기
교육청	▶ 운동부·예체능 학교의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관행	3~6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선거 이후 부정청탁에 따른 예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채용·승진 등 인사부정 등	9~11월
공공기관	▶ 민간업체로부터의 부적절한 협찬 수수,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판정·조작행위 등	10~12월

- **(제도 운영)**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서면), 부적절 처리기관에 대한 수시 현지점검 확대
 - **(정기 서면점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교육·상담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등
 - **(현장 중점점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미적용, 금품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협조 요청 사항]

- 실태점검 및 현지 방문 협조(전 공공기관)
 - (취약분야)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실태 점검 시 관련 자료 및 의견 등 제출협조(수시)
 - (제도운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점검 시 자료 제출(2월) 및 현지 방문 협조(5~6월)
-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교육·홍보 적극 참여(전 공공기관)
 - (교육)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개최(3·7월 예정, 별도 공문시행)
 - ※ 기관 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법 제20조),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연 1회 교육(시행령 제42조) 등 별도 실시
 - (홍보) 설·추석 명절계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적극 활용 협조

4

공공재정 누수 실태점검 강화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행실태점검 강화를 통해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 집중관리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행실태점검 강화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환수 등 제재실적 자료입력이 미흡한 경우, 종합청렴도(청렴 노력도) 평가에 반영 예정
 - * '21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자료 미입력, 제재 실적 없음으로 입력한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22년 1분기 전수조사 계획)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환수 등 처리 실적에 대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 부정청구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공재정 누수분야 집중 점검 및 대국민 공개
-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정수급 관리 미흡기관, 부정청구 빈발 및 외부지적 분야 등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 실시(연중)

[협조 요청 사항]

-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환수처분 등 처분관련 자료입력 철저 (전 공공기관)
 - * 법 제25조 : 지급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제납처분, 명단 공표 등
 - * 시행령 제28조 :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 가능
- 일반국민,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 등 적극 홍보(전 공공기관)
 - * 사업공고문, 신청서, 사업 홍보물, 안내 자료 등에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철저
- 공공재정 집행 후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기관별 자체 점검 실시 등 공공재정 관리 강화(전 공공기관)
- 부정청구 등 발생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법적 조치사항 이행철저(전 공공기관)
- 공공재정 집행관련 '이행실태점검'(2~12월) 시 인력지원, 자료제출 등 협조 (해당 공공기관)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의견제출(전 공공기관)

◇ 개선권고 과제 이행관리 강화와 공공기관 사규 전수 점검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제도 개선 효과 확산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 (정기 이행점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 대비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반기별) 시 각급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한 후 점검결과 제출
 - ※ (제출사항) 이행완료 여부, 미이행 과제별 지연 사유 및 추진계획 등
 - 이행점검 결과는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이행완료 여부 검토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 및 종합청렴도(청렴 노력도) 등에 반영
- (저조기관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권고 이행을 일정수준 이하 기관, 이행방안 협의 수요기관 등에 대한 개별 컨설팅(4월 중 안내 예정)
 -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감독기관과 협업점검 실시
 -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사례 등은 언론 공표
- (장기 미이행 과제) 장기 미이행 개선과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
 - 권고 후 장기간이 지났으나 이행률이 저조하거나 미이행된 과제 전수점검(11월)
 - 점검결과,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국민 입장에서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 환경 및 정책변화 등으로 시의성 떨어지는 과제는 현실에 맞게 재권고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결과 제출(전 공공기관, 반기별)
 - ※ 기관별 자체 점검에 따른 세부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3, 9월)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 맞춤형 이행지원 필요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해당 기관)
 - ※ 컨설팅 신청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4월)

- ◇ 공직사회 내 부적정 관행 해소를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 ◇ 각급 기관의 이행 노력 유도 및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통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

□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로 공직사회 부조리 관행 해소

- **(행동강령 체계 정비)**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 갑질 피해자 보호 강화 등 행동강령 세부 행위기준* 신설
 - *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갑질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등 보호방안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中)
- **(윤리규범 내재화)** 공공부분 갑질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 확대 및 갑질 신고 빈발 기관 등 점검
 - ※ 행동강령 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갑질 행위자 징계 여부 등 중점 확인

□ 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점검 추진

- **(이해충돌)**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운영실태 점검(상반기)
 - ※ ①각급 기관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기준 등 운영실태 점검, ②21.8월 권고한 가상자산 유관기관 대상 직무 지정 등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
- **(지방계약)** 지역사회 유착구조에 기반한 특혜성 수의계약, 법령을 위반한 계약 발주 등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지방계약분야 실태점검(8월~)
 - ※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등 일감 몰아주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체와의 수의계약, 소방·전기·통신공사 등 법령에 의한 분리발주 의무 위반 등 점검
- **(직책 판공비)** 국책연구기관의 직책 판공비* 예산 운영 현황 및 개인 목적의 부적정 집행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실태 점검(9월~)
 - ※ 일부 연구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요 보직자에 대해 일정 한도 내 직책 판공비 카드 지급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및 개정사항 권익위로 제출 (전 공공기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시 개정사항을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신속히 반영
 -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절차 진행 중('21.12월~)
-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실태점검시 자료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해당기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기관 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권익위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실태점검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 관계기관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적극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 필요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빈발분야 재발 방지 노력 강구 (전 공공기관)
 - 특히,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조례·사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여비 허위·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및 자체 점검 강화

- ◇ 반부패·청렴 정책·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식 개선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
- ◇ 공직자 의무교육으로서 청렴교육 확산, 각급기관의 내실있는 청렴교육 지원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원

1.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제고

□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 청렴연수원 및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 청렴교육 확대·내실화
 - **(원내 교육)**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사례, 명사 특강 등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청렴 리더십 과정’ 확대
 - ※ 청렴연수원 고위직 교육 현황 : ('20) 561명 → ('21) 1,290명 → ('22) 약 1,700명 예정
 - **(기관 협업)**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과정 등에 반부패·청렴 교과목, 특강 개설·운영 활성화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광역지자체 소속 인재개발원 등
- 제8회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지방분권 확대에 발맞춰 신임 지자체장, 교육감 및 지방의원의 청렴역량 강화
 - **(지자체장, 교육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협의체를 활용한 청렴교육 및 대면 교육 강화 추진
 -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청렴Live, 청렴서약식 등 맞춤형 교육 운영(워크숍·연찬회 연계 청렴교육 제공)

□ 공공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반영 추진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소속 공공 교육 훈련기관 중심으로 청렴교육 과정 별도 개설 확대 추진
 - ※ 전체 109개 공공 교육훈련기관 중 91개 기관에서 청렴교육 실시 중('21.6월)

[협조 요청 사항]

-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청렴연수원 운영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리더십 과정(대면교육)' 교육 참여
 - 각급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운영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활용 및 청렴연수원 제작 교육자료 적극 활용
- 각급기관 소속·소관 교육기관에 청렴교육 별도 과정 확대 편성

2.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등

□ 부패방지·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 **(교육 현황점검)** 청렴교육 의무화(「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점검 실시
 - '21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을 '청렴포털'을 통해 취합, 필요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특별 교육명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청렴교육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감사관 등 관리자 특별교육 등 추진 예정(7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주요내용 >

· (특별교육 명령 근거 마련)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권익위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의2제3항 신설)

-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실적을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 공개실적은 종합청렴도평가(청렴 노력도)에 반영
- **(대면교육 이수율 제고)**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한 화상교육 시스템 도입 등 대면교육 대상자의 이수율 제고 노력 필요
 - 신규자, 승진자 외에 고위직도 대면교육 대상자로 포함 예정이므로 (시행령 개정, ~7월), 각급기관의 고위직 대면교육 이수율 제고 노력 요청

□ 코로나-19 환경 속 비대면 청렴교육 방식 유지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여건에 맞춰 비대면 청렴교육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 병행
- 신규자, 승진자, 고위직 등 대면교육 이수 필수자를 위해 **실시간 대면 화상교육 운영**(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집합 교육으로 운영 가능)
- ※ 세부 교육일정 등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2월 중)

< 청렴연수원 주요 집합교육 과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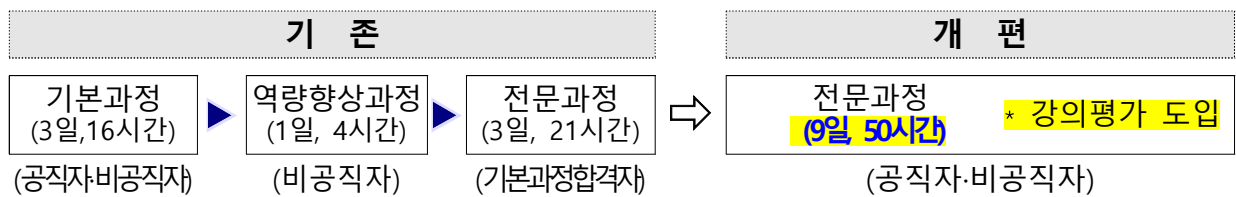
세부분야	교육과정
기관방문 청렴교육	▶ 청렴Live(청렴콘서트)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청렴교육 일반	▶ 청렴리더십(고위직) ▶ 신규자 ▶ 승진자 ▶ 부패대응능력 향상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강사양성 교육	▶ 내부강사 양성과정 ▶ 강사양성 전문과정 ▶ 청렴교육강사 보수교육
청렴윤리경영 교육	▶ 리더십 향상과정 ▶ 취약직군 맞춤형 과정 ▶ 업무 담당자 과정 ▶ 찾아가는 청렴윤리경영 교육

- **(이러닝 교육)**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14종 교육 콘텐츠 탑재·운영(2~12월,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
- **(청렴 라이브)** 희망기관에 대해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콘텐츠(관소리, 마당극 등)를 활용한 공연형·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집합+온라인)
- ※ 대상기관 선정 시, 기관장·고위공직자 참석률이 높은 경우 또는 지역별 기관 합동교육 추진 시 우선순위 부여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청렴강사 양성

- **(기관 자체교육 시 콘텐츠 활용)** 비대면 청렴교육 활성화와 각급기관 청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한 청렴교육 콘텐츠 총 10종 개발 완료('21년)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와 권익위 유튜브(권익비전) 등에 게시,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려 받기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 청렴연수원에 공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유 지정 가능

- (각급기관 강사 양성 지원) 청렴강사 양성을 ‘내부강사과정’, ‘전문과정’으로 개편하고 강사양성 과정을 통합·단순화
 - ‘내부강사과정’은 기관교육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선발 후 필기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1년간 내부강사 자격을 부여
 - ‘전문과정’은 강사양성 3단계 과정을 1단계로 통합·단순화하되, 강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강의 효과성 제고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연수원 운영 교육 과정 참여 및 청렴콘텐츠 적극 활용
 - 실시간 온라인교육, 청렴라이브(Live), 지방의회 및 고위직 과정 등
 - * 별도 수요조사(2월) 및 매월 초 교육과정 안내 예정
 - 청렴콘텐츠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권익비전, 공유 클라우드 접속 등으로 이용 가능
-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를 활용
 - 청렴교육 전문강사·소양강사(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평가를 합격한 소속직원 활용
 -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는 청렴연수원 ‘내부강사 양성과정’ 참여 (신규보직자 필수)
- ‘21년도 교육운영 실적 청렴e시스템 입력(제출) 협조(全 공공기관, 2월 중)
- ‘22년도 전 공공기관 교육 이수율 제고 노력 협조
 - (감독기관) ‘22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의무교육 등 안내 및 교육 지원 협조

◇ 사회각계의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 역량을 제고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 논의 및 연계 강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청렴 정책의제 발굴·제안

- 시의성 있는 주요 반부패·청렴 현안을 발굴하여 의제화하고 심의·의결된 안건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회적 관심 환기
- 공유가 필요한 안건은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함께 개선 추진

* 시민사회, 경제, 직능, 언론·학계, 공공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참고 : 2021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책제안 사항 >

- ▶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 ▶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 개선
-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 ▶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 ▶ 갑질 근절대책 강화
- ▶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와 연계 강화

- 17개 시·도 민관협의회 참여 기관·단체 대상 우수사례 공유, 방문 컨설팅 등 지원
- 시·도 민관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워크숍 추진

- * 주최 : 시·도 민관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
- * 시기 : 지방선거 후 3분기(9월경)
- * 참석 : 시·도 민관협의회 위원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 * 내용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거버넌스 방향, 지역 청렴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표, 협력사항 논의 등

□ 기관별·분야별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사회협약 체결 이행 내실화 제고 및 신규 협약 체결 지원(연중)
 - (기존 협약 체결기관) 협약 우수사례 공유, 협약 활성화 등 지원
 - (신규 협약 체결기관) 협약 도입·체결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청렴사회협약 체결 기관(단체),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등과 연계·협력하여 전방위적 청렴문화 확산 추진

※ 기관·단체가 보유한 다양한 채널(유튜브, SNS, 전광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활용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표준운영규정 마련 등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및 개정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 개최('22. 하반기)
- 기관별(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워크숍 실시(연 3회)
- 신규 도입 및 희망 기관 등에 대한 우수기관 사례공유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도입 적극 검토(안전별 해당기관)
- 기관별 청렴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전 공공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우수사례 발굴 협조 및 개정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해당기관)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적극 조성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업·교육

- '21년 신고자 보호정책과 제도개선 결과 공유 및 '22년 운영방향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도 운영기관 협의회 추진(5월, 11월)
- 지방자치단체 담당 신규 공무원 대상 신고자 보호 예방교육 실시
 - ※ 1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교육원과 협의하여 정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추진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공유

< 신고자 보호 관련 주요 개정내용 >

- (징계·행정처분 책임감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에 대해 처분권자가 자체 책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공통)
-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부패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 (구조금 대상 확대) 부패·공익신고 관련 모든 소송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가능(공통)

□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범위를 확대 추진

- 탈세·횡령 등 기업 범죄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형법」, 「조세범 처벌법」 등 추가 추진
 - ※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정청구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형법」상 횡령·배임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참여 협조(광역지자체, 교육청)
- 부패·공익신고 접수 시 주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숙지 및 철저히 관리되도록 주의(전 공공기관)

-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조치, 신고내용은 담당자와 결재자 외 공유 금지
- * (주요 위반사례) 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고사건을 처리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신고내용 및 신고자를 전 소관부서 직원에게 메모보고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
- 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고로 접수된 민원이어도 그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제보·신고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필요
- * (주요 위반사례)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신고성 민원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 내용을 피진정업체에 송부해 해당 업체 사장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취하 종용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전 공공기관)
 - (조치)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에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과정 개설 협조 (해당 기관)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조치1) 기관별 공익신고 관련 홍보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471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등) 반영·최신화
 - (조치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기관별 자체 홍보 및 보도자료 제작·배포 시 권익위 사전협의 협조

※ 기관별 홍보자료에 법개정 사항 등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 예정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 (해당기관, 2월)
- 부패·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극 추천(전 공공기관)
-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해당 기관)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고창구의 관리 강화로 부패·공익 침해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권익위 심사기획과-4674호('21.11.9.)에 따라 전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 시달

□ 각급기관별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고까지 3단계 이내에 접근토록 개편

※ (예시) 홈페이지 메인 > ① 민원 접수/ 부패·공익신고 > ② 유형별 민원 접수 / 신고 창구 바로 연결 / 유형별 신고(접수)

- 신고창구를 유형화해 각 기관별로 2개 수준(일반신고(민원) 및 부패·공익신고)으로 통합

□ 신고자 보호제도 등 안내 철저 및 시스템 보안 강화

- 민간 위탁업체가 신고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신고창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제도' 사전안내 철저

※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이 어려움을 사전 안내토록 조치

※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수시 업데이트 하거나, 수시 업데이트가 곤란한 경우에는 권익위 홈페이지 제도 소개로 링크

- 시스템 취약으로 인해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관리인증을 득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 등 철저

□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로 연결조치 강화

- 각 기관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창구를 가급적 권익위가 관리·운영하는 청렴포털로 직접 연결되도록 조치

※ 부패·공익신고, 청탁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
⇒ “청렴포털”로 연결

[협조 요청 사항]

-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 개선 추진 요청 : '참고자료 3' 참조

- ◇ 각급 공공기관내의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안내 등 철저
- ◇ 비위면직자 관련 정보의 청렴포털 자료입력 등 적극적인 협조 요청

□ 비위면직자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회 통과('21.12.9.)로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 안내 필요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6항

< 참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

-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재직 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비위면직자등 현황자료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 입력 철저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퇴직 후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철저
- 공공기관이 위원회 '공공기관 청렴포털시스템'에 비위면직자등 발생사실을 상·하반기(연 2회) 보고(입력)하여야 함에도 누락 빈발
※ '21년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현황 점검 시 청렴포털 입력 누락 의심자가 ○○명 적발되었고, 그중 ○명은 취업제한제도 위반에 따른 고발요구 등 제재

□ 2022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교육 참여 적극 협조

-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과정」에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1기) 3.2.~3.4, (2기) 5.2.~5.4, (3기) 6.27.~6.29, (5기) 8.17.~8.19.

[협조 요청 사항]

1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 (조치1)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취업제한 기한, 취업제한기관 등)를 지체 없이 공문을 통해 안내
- (조치2)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 (수령증 등)는 5년간 보관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예방

2 채용공고시 비위면직자등 결격사유 명시 및 사전심사 활성화

- (조치1) 공공기관 채용공고문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규정을 명시하여 공고
- (조치2)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권익위에 유권해석 등 적극 요청 후 처리
- (조치3) 공공기관 채용시(정규·계약직, 공공근로 등)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시스템'과 원 소속기관의 확인을 통해 채용후보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철저

3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및 자료제출 철저

- (조치1) 위원회 상·하반기(각 1회)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를 청렴 포털에 입력시 제출기한 엄수 및 관련 서류(징계처분사유서, 판결문) 등 제출 철저

※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조치2) 취업제한 위반여부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 실태점검 관련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사실관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기한 내 제출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 각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이 될 경우 취업제한 대상임을 수시로 교육하고, 향후 권익위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협 조 사 항

1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처리 협력 강화

1. 기본방향

- **(적극행정 국민신청)**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권고
- **(소극행정 재신고)** 최초 소극행정신고로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신고인의 재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처리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 기존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국민) → 검토 및 처리방향 의견제시(권익위) →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업무 처리(소관기관) → 결과 통지(소관기관)
 - ※ 적극행정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 감사부서 사전컨설팅)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 징계의결 등 면제
-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 재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재검토 요청, 업무 처리방식의 개선 등 권고
 - ※ 처리절차 : 최초 소극행정신고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에 설명요청, 관련 자료·서류 제출 요청,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신고의 타당성 검토

[협조 요청 사항]

-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한 감사부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 최초 소극행정신고에 대한 감사부서의 내실있는 검토를 통해 재신고 최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재신고 권고사항 이행 철저

1. 기본 방향

-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자체가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임
- 이에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해당기관은 자체 감사 시 해당 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함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

2. 주요 내용

-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 시정권고 :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표명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는 책임 면제가 가능*함에도 각급기관에서는 감사 우려를 이유로 권고 수용 및 이행에 소극적

* 국민권익위 권고는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5인의 위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결정

[협조 요청 사항]

-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 권익위 권고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 ①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각 기관별 자체 감사 또는 적극행정 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37조(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 사례 : 여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대상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기본 방향

-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적극구제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2. 주요 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
 -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행정기관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제도
- 민원처리의 기본법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이 포함(시행 '19.6.4.)

[협조 요청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적극 설치

1. 기본 방향

-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6·25전쟁 무렵부터 사망한 군인 2,048명의 전사·순직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사례 발견
- 전사·순직 군인의 명예회복, 유가족 상처 치유 등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 협업 하에 신속한 유가족 찾기 추진

※ 그간 육군에서 유가족 찾기를 수행해 왔으나,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익위-국방부-보훈처 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찾기 특별조사단' 구성, 유가족 찾기 추진('21.12.15.)

2. 주요 내용

-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이 경과되며, 자료의 부재 및 주소변경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 존재
- 대국민 홍보 및 현장 탐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기관 협조 필요

[협조 요청 사항]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유가족 찾기 홍보 요청 (전 공공기관)
 - 웹배너를 클릭하면 육군본부 유가족 명단 메뉴로 연결 조치
 - ※ 육군 홈페이지 - 국민마당 -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대상(명단) 메뉴로 링크하여 해당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카드뉴스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6.30.)
 - 기타 공공기관 고지서,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협조 요청
 - ※ 웹배너, 카드뉴스 디자인, 안내문안 등은 권익위에서 제공(별도공문)
- '직원' 대상 내부 홍보 실시 (전 공공기관)
 - 친인척, 내 고장 지인 중 전사·순직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특별조사단으로 유선 연락 및 상담 안내
 - ※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74, 044-200-7375
 - 육군본부 보훈지원과 : 042-550-7387, 042-550-7391
-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단 탐문시 현장방문 협조 요청 (지방자치단체)

참 고 자 료

(기 관 명)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표준안 비교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2. <좌동> 3. (예) <u>구직 활동 중인 퇴직예정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u>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다르게 규정하였거나,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한 조문만 위 비교표에 작성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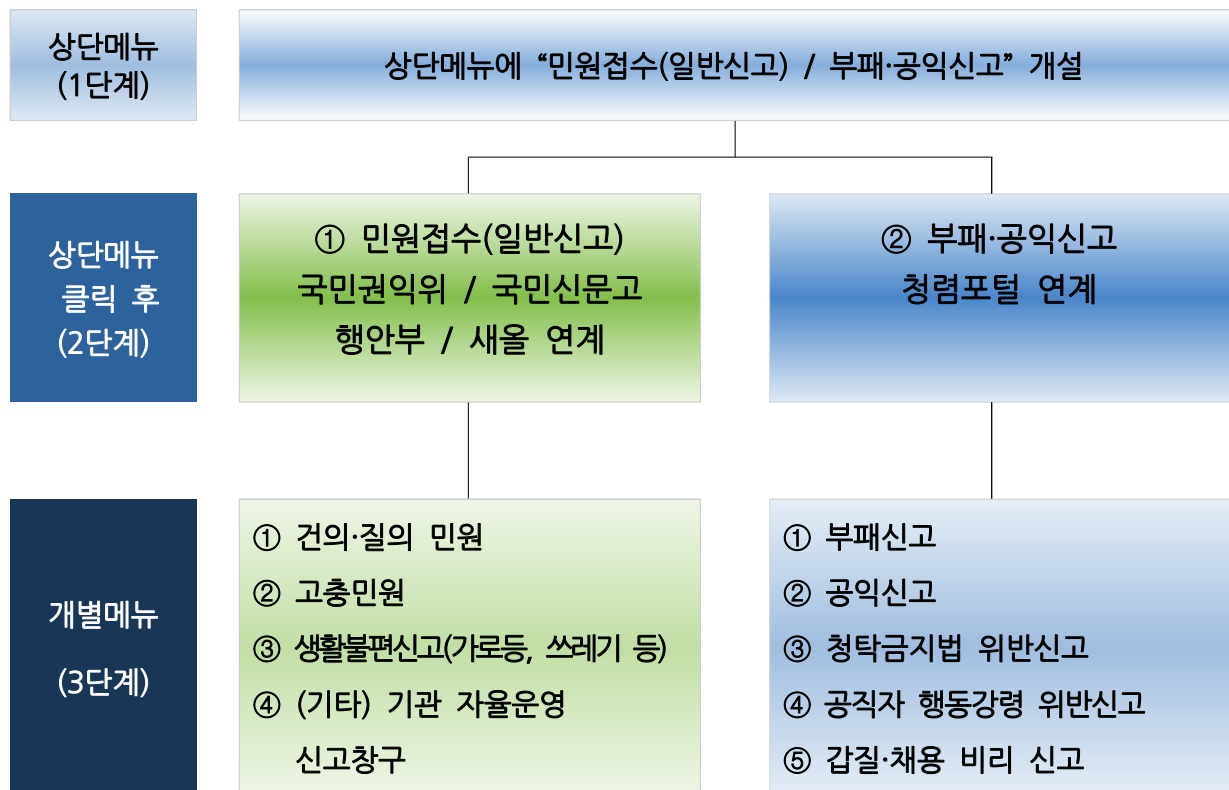
연번	유 형	콘 텐 츠 명	내 용 요약
1	교육영상물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2020년 제작)	아동 대상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청렴 가치관을 전달하는 영상물(3종)
2	교육영상물	권익슈카 (2021년 제작)	유튜버 슈카월드가 출연해 국가청렴 도의 중요성, 공익신고 주요 사례 등을 소개(2편)
3	교육영상물	청렴 우수사례 탐구생활 (2021년 제작)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시 책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영상물(3편)
5	교육영상물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영상 (2021년 제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의의, 법 주요내용 등에 대해 권익위 원장이 직접 출연해 설명하는 영상물
6	교육영상물	반부패·청렴 교육 선행 학습 영상물 (2021년 제작)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입교 전 주요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사전 학습 을 위한 영상물(5편)
7	온라인 공개강좌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019년 제작)	청렴과 인문학을 연계한 패널간 토크 형식의 영상물(6차시)
8	온라인 공개강좌	‘문화와 생활 속 청렴’시즌 2 (2020년 제작)	세계의 청렴국가를 유명 외국인 패널 들이 소개하는 영상물(6차시)
9	북 러닝 영상	청렴 북 러닝 (2020년 제작)	청렴 주제와 관련된 책을 분야별 전문가 들이 요약하여 전달하는 영상물(4편)
10	청렴 북콘서트	청렴 북콘서트 (2021년 제작)	분야별 전문가가 청렴 필독서를 선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생각할 거리 를 제시(5편)
11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영상, 노래, 시 등	’19년~’21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영상분야 수상작(104편)
12	웹 드라마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2020년 제작)	중고등 대상 청렴 웹드라마(4편)
13	웹 드라마	청렴 웹드라마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 (2021년 제작)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당·차별에 당당히 맞서며 우정을 통해 청렴 가치관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야기

1 신고창구에 대한 접근성·편리성 제공

➡ 이용자들이 손쉽게 신고창구를 찾을 수 있고, 이용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누리집 메인화면에 “민원접수와 부패·공익신고”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고 항목을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2) 신고내용, 신고자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 지양

< 신고창구 통합 방안 및 접근경로(예시) >



- ▶ **(일반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접수
예시) 생활불편(가로등 보수, 쓰레기 수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공무원 단순 불친절 등
- ▶ **(부패·공익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예시) 농지법·방위사업법 등 471개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 창구로 연계

2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 개선

➡ 법적근거, 신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창구 운영

- (조치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신고 소개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 사항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신고하기'로 바로 연계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등(국민신문고로 연계하지 않도록 유의)

※ "게시판 형태의 신고창구 운영"으로 발생하는 신고제목, 신고자 정보 등 노출이 원천적 차단한 상태로 신고 가능

- (조치2) 기타 민원성* 신고 → '국민신문고' 등으로 연결

* 건의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생활불편신고(가로등, 쓰레기 등), 기타 기관 자율 운영 신고창구

- (조치3) 공공기관에서 신고창구 자체 운영이 어렵거나 청렴포털 개설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여 국민권익위에 신고토록 조치

부패·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신고토록 조치

➡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기관에 직접 접수가 원칙

- (조치1) "익명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보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창에 사전 안내 조치

< 안내문 예시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2) "실명신고" 부패·공익신고는 신고자 보호·보상이 연계되므로 신고기관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민간 위탁 운영 지양

4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신고시스템 운영 철저

➡ 법률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유지를 위해 시스템을 보안관리 철저

- (조치1) 신고접수 과정에서 업체의 업무담당자 외 직원이 신고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 대상 신고자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조치2) 민간 위탁계약 종료 이후에도 업체에서 신고관련 정보가 누출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자료 폐기 관리)
- (조치3) 시스템 운영 중 권한에 따른 접근 관리가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항목에 대하여 기록이 관리되어야 함(6개월 이상 보관)
- (조치4) 시스템 취약으로 인해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보 보안 관리인증을 득한 업체를 선정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조치
 - ※ 용역사업 발주계약 시 공고서 등에 용역 참여직원의 보안준수 사항, 누출금지 정보 등 관련법령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임을 사전 공지
- (조치5)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및 웹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조치 후 운영
 - ※ 사용자 패스워드 설정 시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토록 관리
- (조치6)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신고자, 참고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추정 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관리 철저

최신 법령 등에 기반한 올바른 신고 정보 제공

➡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제도, 신고자 비밀보장, 보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공토록 조치

- (조치1) 홈페이지 콘텐츠를 최신의 것으로 수정·운영하여 신고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 공익신고 관련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주소/명칭, 징역, 벌금 부과 금액, 보상금 상한액 및 하한액, 기존 운영지침 제공 등 오류 등 조치
- (조치2)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로 연결하고, 부패·공익 등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의 제도 등의 소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내 제도 소개 부분으로 가급적 연결(신고를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은 유의) 조치

6 신고시스템 본인확인 시 고려사항

➡ **본인확인(실명, 신원확인, 로그인 등)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신청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1) 신고 접수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한 조회방식은 신고자 정보가 유출 가능성이 크고 보안에 취약하므로, 본인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청렴포털 오프라인 신고도 등록하여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리 중

※ 오프라인에서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게 관리

- (조치2)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이용시, 신고인이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이외 1개 이상의 대체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

* 본인확인 :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주민과 실명확인서비스 등

본인인증(로그인) : ID/PWD, SMS, OTP, 생체인증, 디지털원패스 등

<공인인증서 운영방식>

방 식	특 징	비 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체계	패스워드 9자이상 (영문, 숫자, 특수 문자 포함)
IPIN	·아이핀은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도용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20년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라는 말이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디지털원패스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간편인증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 인증서 발급	
휴대폰본인확인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지와 해당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확인 가능 ·PASS, QR, PIN, 지문, 문자인증 등 방식 제공	
실명확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	

7 기관자체 운영 중인 민원창구에 부패·공익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 민원창구로 접수되었더라도 부패·공익신고 등 해당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적용됨
- 이에 업무 처리담당자에게 배정 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등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스템 상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고지 조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8 기관자체 신고처리시스템에 대한 신고자 보호 강화

➡ 원칙적으로 청렴포털 이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자체 운영

- (조치1) 신고 조회, 접수 화면 등 인쇄버튼 클릭 시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인쇄되지 않도록 조치
- (조치2) 담당자 처리화면에 개인정보보호 주의사항 외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 추가 안내

분

임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①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및 제출	~ 5.18.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제출	~ 5.18.	전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 5.18.	해당 공공기관
④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제출	~ 5.18.	전 공공기관
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연 중	전 공공기관
⑥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 조사, 이행 실태 점검 시 자료제출 등 협조	연 중	해당 공공기관
⑦	권익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협조	연 중	해당 공공기관
⑧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등 자율적 이행 노력 전개	연 중	전 공공기관
2.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시행			
①	'21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실적 제출	~3.31.	'21년 측정·평가 대상기관
②	종합청렴도 기본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의견 제출 및 간담회·워크숍 등 참석	2~4월	'22년 평가 대상기관
③	종합청렴도 실시계획 통보에 따른 자료 제출	5~11월	'22년 평가 대상기관
④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사항 협조	하반기	'22년 평가 대상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			
①	제도운영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지방문 협조	2월 5~6월	전 공공기관 해당기관
②	취약분야 실태점검 관련 자료 및 의견 등 제출	수시	해당기관
③	제도운영 설명회(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	3, 7월	전 공공기관
④	법 바로 알리기 홍보자료 활용	1, 9월	전 공공기관
4. 공공재정 환수제도 보완 및 실태점검 강화			
①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및 사례 적극 홍보	수시	전 기관
②	공공재정지급금 관리 강화	수시	전 기관
③	부정청구 발생 시 환수 등 법적 조치사항 이행	발생시	전 기관
④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	2월, 8월	전 기관
⑤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점검	2~12월	해당 기관
⑥	제도개선 의견 제출	수시	전 기관
5.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①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결과 제출	반기별	전 공공기관
②	맞춤형 이행지원 필요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4월	해당 기관
③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점검 협조	반기별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6.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확립			
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개정 후 개정결과를 권익위로 통보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절차 진행 中(21.12월~)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실태점검시 자료제출·현지 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소속 공직자 대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 기준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 적극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7.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①	부처별 소관 분야 대상 반부패 개혁과제 후보 제출	2.28.	해당 부처
②	기관장 등 소속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연중	해당 기관
③	청렴연수원 운영 교육 과정 참여 및 청렴콘텐츠 적극 활용	2월 이후	전 공공기관
④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강사 활용	연중	전 공공기관
8. 민·관 및 국제사회 반부패 협력 강화			
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도입 적극 검토	연중	안건별 해당기관
②	기관별 청렴실천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실천	6월	전 공공기관
④	청렴시민감사관 우수사례 발굴 협조 및 개정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연중	해당 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9.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참여 협조	5, 11월	광역 지자체, 교육청
②	신규 공무원 대상 교육에 신고자 보호 예방 교육과정 개설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③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 및 기관별 홍보물에 법 개정내용 반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④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자료 제출	~2월	해당 기관
⑤	부패·공익신고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극 추천	분기별	전 공공기관
⑥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금의 적기 납부	상시	해당 기관
10. 온라인 부패·공익 신고창구 일제정비 추진			
①	공공기관 신고창구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등 강화	상반기	해당 기관
②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철저	연중	해당 기관
11. 비위면직자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채용공고시 비위면직자등 결격사유 명시 및 사전심사 활성화	수시	전 공공기관
③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및 자료제출 철저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교육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2. 부서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이병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감사관 회의 운영 등	044)200-7612	044) 200-7939
	한건희	청렴교육 현황 관리, 컨설팅	044)200-7616	
청렴조사 평가과	이진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평가기관별 권익위 담당자는 추후 별도 공문으로 공유 예정	044)200-7632	044) 200-7940
	김경용		044)200-7633	
	이하윤		044)200-7635	
	이동식		044)200-7638	
	연나영		044)200-7636	
	이지현		044)200-7637	
	윤종선		044)200-7639	
부패영향 분석과	박세희	현행법령(사규 포함) 부패영향평가	044)200-7656	044) 200-7941
	윤태현		044)200-7659	
	이종호		044)200-7652	
	권선미		044)200-7661	
행동강령과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백소망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정희찬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및 실태점검	044)200-7677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TF	조유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총괄	044)200-7672	044) 200-7942
	김희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044)200-7674	
	한세근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조수연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및 홍보 기획	044)200-7679	
	권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및 홍보 운영	044)200-7681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탁금지 제도과	이준민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권문택 정나리	유권해석 질의답변	044)200-7704 044)200-7708	
	김윤구	제도운영 현황 실태점검	044)200-7706	
	김종혁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획총괄	044)200-7127	
	최무선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획지원	044)200-7291	
민간협력 담당관실	손치훈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문화 확산	044)200-7160	044) 200-7917
	박정희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 개발·운영	044)200-7164	
	정유민		044)200-7166	
	정영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044)200-7163	
	장지욱	청렴사회협약,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044)200-7167	
제도개선 총괄과	장은경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200-7216	044) 200-7921
	최상권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200-7224	
심사기획과	김혜진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92	044) 200-7943
	김남행	청렴포털 운영·관리	044-200-7689	
	우은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한수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보호보상 정책과	전이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044)200-7754	044) 200-7948
	이진아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 유권해석	044)200-7757	
	전승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홍보	044)200-7752	
	이 선	공공기관 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044)200-7755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공공재정 환수제도과	박종혁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044)200-7642	044) 200-7690
	류지호	이행실태점검	044)200-7643	
	서지만	법령 해석	044)200-7644	
	정혜정	교육 및 홍보	044)200-7645	
	임성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044)200-7647	
청렴연수원	송두원	윤리준법교육 과정 운영	043)901-6144	044) 200-7973
	유용원	청렴교육 콘텐츠	043)901-6136	
	윤소영	청렴교육 강사관리, 교육운영	043)901-6142	
	권건우	청렴도 종합평가	043)901-6113	